

지정번호 제 호

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

기관명			
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소재지	(전화번호:)		
최초지정 연월일			
지정사항	진단 대상 야생동물 질병		
	검사항목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야생동물
질병관리원장

직인